의안번호	제782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이종화 의원 대표발의)

발의자	이종화 · 박춘덕 · 김종대 · 심영석 · 이우완 · 이해련 김인길 · 박현재 · 정길상 · 최희정 · 김상현 · 김상찬 김태웅 · 전홍표 · 정순욱 · 백승규 · 공창섭 · 김경희 김장하 · 문순규 · 김우겸 · 한은정 · 박성원 · 최은하 조영명 · 전병호 · 박선애 · 지상록 · 권성현 · 진상락 주철우 · 김경수 · 노창섭 의원
발의연월일	2021. 7. 7.

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82

발의연월일 : 2021. 7. 7.

발 의 자 : 이종화·박춘덕·김종대·심영석·이우완·이해련 김인길·박현재·정길상·최희정·김상현·김상찬 김태웅·전홍표·정순욱·백승규·공창섭·김경희 김장하·문순규·김우겸·한은정·박성원·최은하 조영명·전병호·박선애·지상록·권성현·진상락 주철우·김경수·노창섭 의원(33명)

1. 제안이유

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에 따라 지역문화의 계발·보존 및 전승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문화원 지원·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을 변경함

- (현행)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
- (개정) 창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나. 목적 및 정의,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3조)

다. 문화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라. 보조금의 지원과 사무의 검사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6조)

마. 시설의 개방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바.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사.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~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나. 현행 조례

창원시 조례 제　　호

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창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의 계발·보존 및 전승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문화원의 지원·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창원시 문화원”(이하 “문화원”이라 한다)이란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창원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
2. “사업보조금”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
3. “운영보조금”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창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.

② 문화원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,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.

제4조(사업)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·보급·보존·전승 및 선양
2. 지역문화(향토자료를 포함한다)의 발굴·수집·조사·연구 및 보존·전시
3.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
4. 지역문화의 개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
5. 지역문화와 관련한 강연회 및 강습회 등의 개최
6. 지역문화와 관련한 간행물의 제작·배포 및 교육
7.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
8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
9.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업

제5조(보조금의 지원 등)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에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에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.

1.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

2. 문화원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및 임차비(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임차비에 한함)
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

제6조(사무의 검사·감독)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, 관계 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시설의 개방 등) 문화원의 시설 및 문화원의 각종 자료는 문화원의 설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주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내 항상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조(공유재산의 사용)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.

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공유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.

제9조(관리위탁) ① 시장은 문화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 법인 및 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.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·수탁내용, 위·수탁기간,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.

③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재위탁 등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른다.

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문화예술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(단체)에 다시 대여할 수 있다.

제10조(관리위탁의 해지)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
2.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
3. 문화원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
4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1조(관리위탁의 검사·감독) ① 시장은 문화원 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계 서류, 그 밖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, 관리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문화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고 **관계 법령**

■ 지방문화원진흥법 (약칭: 지방문화원법)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7. 21., 2020. 6. 9.>

1. 삭제 <2020. 6. 9.>
2. 삭제 <2020. 6. 9.>
3. 삭제 <2020. 6. 9.>
4. 삭제 <2020. 6. 9.>

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7. 21.>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[제목개정 2020. 6. 9.]

제4조(지방문화원의 설립)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8. 10. 16., 2020. 6. 9.>

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.

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. <개정 2018. 10. 16.>

④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18. 10. 16.>

⑤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10. 16.>

⑥ 시·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8. 10. 16.>

⑦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“문화원” 또는 “文化院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,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

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(地名)을 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,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7. 21., 2018. 10. 16.>

⑧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(院)을 두며, 필요한 경우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8. 10. 16., 2020. 6. 9.>

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자치구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유지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6. 9.>

⑩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8. 10. 16., 2020. 2. 18., 2020. 6. 9.>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제8조(지방문화원의 사업)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문화의 계발·보존 및 활용
2. 지역문화(향토자료를 포함한다)의 발굴·수집·조사·연구 및 활용
3.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
4.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
5.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
6.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
7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
8.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

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1. 7. 21.]

제15조(경비의 보조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(無償)으로 대여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제19조(조례의 제정)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■ 다문화가족지원법 (약칭: 다문화가족법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1. 4. 4., 2015. 12. 1.>

1. “다문화가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  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   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2. “결혼이민자등”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 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
   나. 「국적법」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
3. “아동·청소년”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
참고 **현행 조례**

■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문화의 계발·보존 및 전승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위치) ① 창원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창원시 문화원사(이하 "문화원사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문화원사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.<개정 2018. 5. 31.>

1. 창원문화원사: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239번길 19-22(용호동) <신설 2018. 5. 31.>
2. 마산문화원사: 창원시 마산합포구 3·15대로 199(중앙동2가) <신설 2018. 5. 31.>

제3조(시설) 문화원사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업무시설
2. 교육실
3. 향토사료실
4. 지원시설

제4조(사업) 문화원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·보급·보존·전승 및 선양
2. 향토사의 발굴·조사·연구 및 사료의 수집·보존·전시
3.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
4. 지역문화와 관련한 강연회 및 강습회 등의 개최
5. 지역문화와 관련한 간행물의 제작·배포 및 교육
6.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
7.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업

제5조(시설 등 개방) 문화원사의 시설 및 각종 자료는 문화원사의 설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든 주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(관리위탁) ① 시장은 문화원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에 따라 설립된 창원문화원 등 관련 전문 법인

및 단체에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사를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·수탁내용, 위·수탁기간,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<개정 2018. 5. 31.>

③ 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연장할 수 있다.

④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일부를 문화예술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(단체)에 다시 대여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5. 31.>

⑤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 징수 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.

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원사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

제7조(위탁의 취소)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
2. 문화원사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
3.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8조(검사·감독) 시장은 문화원사 관리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계서류, 그 밖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, 관리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준용) 이용료의 산정,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, 수탁재산의 관리 등 그 밖의 문화원사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준용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(조례 제505호 2012. 3. 27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조례 제1087호, 2018. 5. 3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창 원 시

수신 창원시의회의장

(경유)

제목 **의원발의 조례 개정 관련 검토의견서 송부(이종화 의원)**

1. 의회사무국-5330(2021. 5. 27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의원발의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.

❑ 조례 개정 개요

조 례 안	부 서 검 토 의 견	발의자
창 원 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○ 상위법 저촉여부 : 해당없음 ○ 지역문화의 계발·보존 및 전승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문화원 지원·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	이 종 화 의 원

붙임 : 1. 조례안 부서검토의견 1부.
2.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(의원발의안) 1부.
3.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(부서수정안) 1부.
4.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.
5. 조문별 검토의견 각 1부. 끝.

창 원 시 장

주무관 **강혜영** 의회협력담당 **김정미** 기획관 전결 2021. 6. 10. **김종필**

협조자

시행 기획관-7610 (2021. 6. 10.) 접수 의회사무국-5917 (2021. 6. 10.)

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, 기획관 (용호동) / http://www.changwon.go.kr

전화번호 055-225-2264 팩스번호 055-225-4702 / aeiou1005@korea.kr / 비공개(5)

「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」

의원발의 조례 개정(안) 검토 보고

이종화 의원 발의 예정인『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』에 대한 검토 보고임.

Ⅰ 관련법령

○ 『지방문화원진흥법』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, 제4조(지방문화원의 설립), 제8조(지방문화원의 사업), 제15조(경비의 보조 등), 제19조(조례의 제정)

○ 『다문화가족지원법』 제2조(정의)

Ⅱ 조례(안) 개요

○ 조례안명 : 『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』

○ 상정시기 : **제10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**

○ 발 의 자 : **이종화 의원(문화환경도시위원회)**

○ 제안이유 : 『지방문화원진흥법』에 따라 지역문화의 계발·보존 및 전승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문화원 지원·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○ 주요내용

가. 제명을 변경함

- (현행)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
- (개정) 창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나. 목적 및 정의,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3조)

다. 문화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라. 보조금의 지원과 사무의 검사 · 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6조)

마. 시설의 개방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바.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사.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~ 제11조)

Ⅲ 부서 검토내용 : 조례안 개정 “수용”

○ 상위법 저촉 여부 : 해당없음

○ 조문별 검토 의견 : 13개 조문 변경

- 세부내역 : 붙임참조

붙임 1. 의원발의 조례 개정(안) 1부.

2. 조문별 검토 의견 1부.

3.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. 끝.

붙 임 **검토의견 송부안(부서 수정안)**

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
발의연월일 : 2021. . .
발 의 자 : 이종화 의원

1. 제안이유

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에 따라 지역문화의 계발·보존 및 전승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문화원 지원·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을 변경함

- (현행)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
- (개정) 창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나. 목적 및 정의,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3조)

다. 문화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라. 보조금의 지원과 사무의 검사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6조)

마. 시설의 개방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바.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사.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~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나. 현행 조례

창원시 조례 제　　호

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창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의 계발·보존 및 전승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문화원의 지원·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창원시 문화원”(이하 “문화원”이라 한다)이란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창원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
2. “사업보조금”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
3. “운영보조금”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창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.

② 문화원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,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.

제4조(사업)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·보급·보존·전승 및 선양
2. 지역문화(향토자료를 포함한다)의 발굴·수집·조사·연구 및 보존·전시
3.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
4. 지역문화의 개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
5. 지역문화와 관련한 강연회 및 강습회 등의 개최
6. 지역문화와 관련한 간행물의 제작·배포 및 교육
7.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
8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
9.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업

제5조(보조금의 지원 등)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에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에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.

1.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

2. 문화원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및 임차비(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임차비에 한함)
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

제6조(사무의 검사·감독)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, 관계 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시설의 개방 등) 문화원의 시설 및 문화원의 각종 자료는 문화원의 설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주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내 항상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조(공유재산의 사용)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.

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공유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.

제9조(관리위탁) ① 시장은 문화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 법인 및 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.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·수탁내용, 위·수탁기간,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.

③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재위탁 등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른다.

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문화예술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(단체)에 다시 대여할 수 있다.

제10조(관리위탁의 해지)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
2.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
3. 문화원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
4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1조(관리위탁의 검사·감독) ① 시장은 문화원 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계 서류, 그 밖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, 관리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문화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 조문별 검토 의견

현 조례	의원발의(안)	부서 검토(안)
제명: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	제명: 창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	이견 없음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문화의 계발·보존 및 전승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의 계발·보존 및 전승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문화원의 지원·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이견 없음
제2조(설치 및 위치) ① 창원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창원시 문화원사(이하 "문화원사"라 한다)를 설치한다. ② 문화원사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 5. 31.> 1. 창원문화원사: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239번길 19-22(용호동) <신설 2018. 5. 31.> 2. 마산문화원사: 창원시 마산합포구 3·15대로 199(중앙동2가) <신설 2018. 5. 31.>	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창원시 문화원"(이하 "문화원"이라 한다)이란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창원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 2. "사업보조금"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 3. "운영보조금"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	이견 없음
제3조(시설) 문화원사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업무시설 2. 교육실 3. 향토사료실 4. 지원시설	**제3조(책무)** ① 창원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. ② 문화원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,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.	이견 없음

현 조례	의원발의(안)	부서 검토(안)
제명: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	제명: 창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	**이견 없음**
제4조(사업) 문화원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·보급·보존·전승 및 선양 2. 향토사의 발굴·조사·연구 및 사료의 수집·보존·전시 3.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4. 지역문화와 관련한 강연회 및 강습회 등의 개최 5. 지역문화와 관련한 간행물의 제작·배포 및 교육 6.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.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업	**제4조(사업)**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·보급·보존·전승 및 선양 2.지역문화(향토자료를 포함한다)의 발굴·수집·조사·연구 및 사료의 수집·보존·전시 3.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4.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5. 지역문화와 관련한 강연회 및 강습회 등의 개최 6. 지역문화와 관련한 간행물의 제작·배포 및 교육 7.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8.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9.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업	**제4조(사업) 변경 의견** 1. 제1호와 같음 2. 지역문화(향토자료를 포함한다)의 발굴·수집·조사·연구 및 보존·전시 3.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~ 9. 제4호 ~ 제9호와 같음
	제5조(보조금의 지원 등)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에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에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 따른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. 1.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2. 문화원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및 임차비(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임차비에 한함)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	**이견 없음**
	제6조(사무의 검사·감독)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	**이견 없음**

현 조례	의원발의(안)	부서 검토(안)
제명: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	제명: 창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	이견 없음
	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, 관계 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.	
제5조(시설 등 개방) 문화원사의 시설 및 각종 자료는 문화원사의 설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든 주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	**제7조(시설 등 개방)** 문화원의 시설 및 문화원의 각종 자료는 문화원의 설치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주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	**제7조(시설 등 개방) 변경 의견**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있도록 근무시간 내 항상---------- ----------
	제8조(공유재산의 사용)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. 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공유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.	이견 없음
제6조(관리위탁) ① 시장은 문화원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에 따라 설립된 창원문화원 등 관련 전문 법인 및 단체에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사를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·수탁내용, 위·수탁기간,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<개정 2018. 5. 31.>	**제9조(관리위탁)** ① 시장은 문화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 법인 및 단체(이하“수탁자”라 한다)에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.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·수탁내용, 위·수탁기간,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. ③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재위탁 등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「공	이견 없음

현 조례	의원발의(안)	부서 검토(안)
제명: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	제명: 창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	이견 없음
③ 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연장할 수 있다. ④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일부를 문화예술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(단체)에 다시 대여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5. 31.> ⑤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 징수 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.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원사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	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른다.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문화예술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(단체)에 다시 대여할 수 있다.	
제7조(위탁의 취소)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 1.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. 문화원사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.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**제10조(관리위탁의 해지)**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 1. 제9조 제2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.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. 문화원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이견 없음
제8조(검사·감독) 시장은 문화원사 관리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계서류, 그 밖에 자료의 제	**제11조(관리 위탁의 검사·감독)** ① 시장은 문화원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계 서류, 그 밖에 자료의 제출을 요	이견 없음

현 조례	의원발의(안)	부서 검토(안)
제명: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	제명: 창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	이견 없음
출을 요구하거나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, 관리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	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, 관리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	
제9조(준용) 이용료의 산정,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, 수탁재산의 관리 등 그 밖의 문화원사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	**제12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문화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	이견 없음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**제13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이견 없음

[별지 제1호서식]

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○ 『지방문화원진흥법』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, 제4조(지방문화원의 설립), 제8조(지방문화원의 사업), 제15조(경비의 보조 등), 제19조(조례의 제정), 『다문화가족지원법』 제2조(정의) 관련 예산 수반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

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장 이 유 정

"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열린 의회"

창 원 시 의 회

수신 창원시장(기획관)
(경유)
제목 의원 발의 조례 제·개정 관련 검토의견 조회 송부(이종화 의원)

의원발의 조례 제·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(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)에 의거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1. 6. 10.(목)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❍ 협의사항 :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저촉 여부, 재정 부담 등

❍ 조례안 개요

조 례 안	발 의 자	상 정 시 기
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이종화 의원	제10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

붙 임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창원시의회의장

주무관 **유혜리** 입법지원담당 **이행정** 의회담당관 **최진호** 의회사무국장 2021. 5. 27. **곽기권**
협조자 문화환경도시 전문위원 **곽창건**

시행 의회사무국-5330 (2021. 5. 27.) 접수

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(용호동) / http://council.changwon.go.kr/
전화번호 055-225-5373 팩스번호 055-225-4743 / hyeri0815@korea.kr / 비공개(5)

붙임 **검토의견 조회안**

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
발의연월일 : 2021. . .
발 의 자 : 이종화 의원

1. 제안이유

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에 따라 지역문화의 계발·보존 및 전승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문화원 지원·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을 변경함

- (현행)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
- (개정) 창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나. 목적 및 정의,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3조)

다. 문화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라. 보조금의 지원과 사무의 검사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6조)

마. 시설의 개방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바.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사.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~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나. 현행 조례

창원시 조례 제　　호

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창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의 계발·보존 및 전승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문화원의 지원·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창원시 문화원”(이하 “문화원”이라 한다)이란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창원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
2. “사업보조금”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
3. “운영보조금”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창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.

② 문화원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,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.

제4조(사업)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·보급·보존·전승 및 선양
2. 지역문화(향토자료를 포함한다)의 발굴·수집·조사·연구 및 사료의 수집·보존·전시
3.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
4.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
5. 지역문화와 관련한 강연회 및 강습회 등의 개최
6. 지역문화와 관련한 간행물의 제작·배포 및 교육
7.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
8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
9.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업

제5조(보조금의 지원 등)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에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에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.

1.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

2. 문화원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및 임차비(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임차비에 한함)
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

제6조(사무의 검사·감독)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, 관계 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시설의 개방 등) 문화원의 시설 및 문화원의 각종 자료는 문화원의 설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주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조(공유재산의 사용)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.

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공유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.

제9조(관리위탁) ① 시장은 문화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 법인 및 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 관리

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.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·수탁내용, 위·수탁기간,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.

③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재위탁 등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른다.

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문화예술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(단체)에 다시 대여할 수 있다.

제10조(관리위탁의 해지)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
2.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
3. 문화원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
4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1조(관리위탁의 검사·감독) ① 시장은 문화원 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계 서류, 그 밖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, 관리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

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문화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「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